

# 국 민 안 전 처

##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마산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허공법 선정 등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창원시

관 련 자 창원시 ○○○○과(전 ○○○○과) 지방○○주사 ○○○

내 용

지방○○주사 ○○○는 2015. 1. 12.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창원시 ○○○○과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시에서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위해 국민안전처로부터 [표 1]과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마산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1] 마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 사업기간                    | 사업비(백만원) |        |        | 주요사업 내용                      | 도급자                | 비고 |
|-------------------------|----------|--------|--------|------------------------------|--------------------|----|
|                         | 계        | 국비     | 지방비    |                              |                    |    |
| 2015.8.24~<br>2018.8.22 | 45,660   | 22,830 | 22,830 | - 배수펌프장 1식<br>- 관로 L = 1.2km | (주)○○○○<br>○○○ 외 2 |    |

\* 자료 : 창원시 제출자료 재구성

### 1. 특허공법 계약부서의 계약심사 등 절차 미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르면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요령’에 따르면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창원시에서는 마산○○ 사업 중 천공오거 케이싱외부에 장착하여 일체형으로 시공하는 ‘시트파일 천공항타공법 및 천공항타장치’ 특허공법과 연약지반 개량 및 연직차수벽 구축을 위한 ‘UCM’ 공법 등 두개의 특허공법을 선정하면서 계약부서 담당자와 사전 협의과정 및 사전에 계약부서에 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함으로써 공법의 필요성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또한, 마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조사된 지질 시추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 사업시행 위치의 지질은 매립층 및 풍화토<sup>75)</sup>로써 특허공법 선정 사유인 자갈, 호박돌 토질과는 상이하여 더 저렴한 공법이 적용 가능함에도 [표 2]와 같이 가장 비싼 공법을 선정함으로써 5억6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

75) 창원시 ○○○○과에서는 매립 사석토로써 UCM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는 천공이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함

[표 2] 마산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특허공법 비교

| 구분            | UCM 공법    | DWM·UCM 공법 | SCW공법     | GCM 공법    | 비고 |
|---------------|-----------|------------|-----------|-----------|----|
| 단가(원)         | 150,000   | 100,000    | 120,000   | 120,000   |    |
| 특허<br>사업비(천원) | 1,680,000 | 1,344,000  | 1,120,000 | 1,120,000 |    |
| 비고            | 적용공법      |            | 적용가능공법    | 적용가능공법    |    |

\* 자료 : 창원시 제출자료 재구성

## 2. 특허 공동권리자에 대한 사용협약 등 미이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에 따르면 신기술 등을 공사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 전에 기술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창원시 ○○○○과에서는 마산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천공오거 케이싱외부에 장착하여 일체형으로 시공하는 ‘시트파일 천공항타공법 및 천공항타장치’ 특허권을 보유한 업체와 특허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특허권자 모두와 사용협약 동의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공동 등록권리자 6명 중 1명의 등록권리자에 대해 사용협약 동의 없이 특허협약을 체결하는 등 특허협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 조치할 사항          창원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사업 추진 시 공법선정 비교 검토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